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28
----------	------

제출일자 : 2019. 9. 6.

제출자 : 달성군수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된 부분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우선시 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합법성을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2조 제6항의 “5천원”을 “1만원”으로 개정함.

나. 제9조 1항의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다.”를 삭제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조례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우선시하여 위법한 제9조 제2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해당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를 삭제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질서행위규제법 제5조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19. 8. 8. ~ 8. 28.)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항 중 “5천원” 을 “1만원” 으로 한다.

제9조(준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도로법」과「농어촌도로 정비법」의 해당규정을 따른다” 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로 한다.

제2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도로법」과「농어촌도로 정비법」의 해당규정과「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 ⑤ (생략) ⑥ 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 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 우는 제외한다. ⑦ ~ ⑧ (생략) 제9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 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가산금 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 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필 요한 사항은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정비법」의 해당규정과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 ⑤ (생략) ⑥ ----- 1만원----- ----- ----- ----- ⑦ ~ ⑧ (생략) 제9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 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가산금 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삭제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 · 징수 및 반환)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질서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